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공익 변론 사례 공유

[사건의 경위 및 범죄사실]

- 보호소년은 보육원에서 반복적으로 무단이탈, 외박과 가출을 하여,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육원시설장의 통고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6호, 10호 등의 처분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 아동복지시설, 소년원 등에서 3년 간 생활하고, 2020. 9. 경 5호 처분(장기보호관찰)을 받고, 보육원으로 복귀하였다.
- 보호소년은 2020. 11. 경 보육원 시설장이 또 통고를 하여 법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소년원에 갈까봐 무서워 7개월 간 가출을 하였다가 2021. 6. 경 보호관찰소에 자수를 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었다.
- 보호소년은 ‘1)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가출), 2)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 3) 외출제한명령 위반’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고, 보호관찰관은 1) 대상자 지지 환경 미약, 2) 대상자 성향(준법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다.

- 1심에서 보호소년의 보조인인 담당 변호사는 1) 보호소년이 보육원에서 성장하며 겪어왔던 소외와 차별, 보호소년이 유일하게 마음을 둘 수 있었던 친구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외박과 가출이 잦았던 상황, 2) 보육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법원에 갈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2020. 11. 보육원에서 도망을 한 점 및 2021. 6. 제 발로 자수하여 재판에 임하였던 점, 3) 보호소년은 곧 만 18세로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주거지원 및 자립정착금 등을 받고 보육원에서 퇴소하여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소년원 등 시설 처분을 받는 경우 중도 퇴소 아동이 되어 국가로부터 주거지원이나 정착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였다.
- 정상에 관하여서는 1) 보호소년은 다수의 가출 경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고, 2) 보호관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 보호소년이 가출기간 동안 방문하였던 다양한 청소년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호소년도 이들 기관을 신뢰하고 있어 추후 일탈 행위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다.
- 그 결과, 1심에서 보호소년은 소년법 제32조 제 1항의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다.

- 항고심에서 담당 변호사 및 인턴들은 케이스를 깊이 검토하여, 보호소년의 행위의 위법성,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할 때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보호소년이 이제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고 제도로 인하여 재판에 가게 된 부당성에 대하여는 차치하더라도, '범죄의 우려' 만으로 10호 처분을 받는 것은 소년법의 목적에 위배되고, 2) 소년원 처분 및 소년원 처우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인데, 보호소년의 비행 행위와 내용, 정도가 10호 처분을 받는 다른 보호소년들에 비해 훨씬 경미하여 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인 점, 3) 보호소년의 가출 등 비행 행위를 보호소년의 탓만으로는 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 그 결과 항고에서 이례적으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보호소년은 소년원에서 즉시 퇴소하여 사회로 되돌아왔다.

보호소년의 감사인사

재판 도와주셨던 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을 재판 준비 기간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고싶었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늘 고맙고,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먹고,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



THANK YOU

서유진
02 - 316- 4058
yjseo@shinkim.com